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15년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연간단가)
2. 공사위치 : 성북구 관내 일원
3. 목 적 : 본 공사는 우리구 관내 도로상 설치된 각종 맨홀의 침하 및 맨홀주변 파손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맨홀을 신기술을 적용하여 긴급 정비함으로 차량통행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고자 시행하는 공사 임.

4.공사개요 : 맨홀보수공 147개소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5.12.31.까지

6. 시공 및 준공

가. 본 공사는 관내 산재되어 있는 각종 맨홀에 대하여 신기술(SMT공법, DSM, TPL-2공법, QMR-2공법, EPM공법, BTT공법) 1개 이상을 이용하여 정비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기관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적용된 당해 신기술보유자(권리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체결시 협약서 원본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7. 예정공정표

공	종	수량	2015.				
			4	6	8	10	12
맨	홀	보	-----				
수	공	1식	-----				
부	대	공	-----				
1식			-----				

8. 공사현장 관리

- 가. 공사 시공 도중 수급인은 감독관의 허가 없이 공중에 해를 미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 나. 공사현장에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일반 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안전조치

- 가. 수급인은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가 있을 때에는 즉시 위험표시 및 적절한 응급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로 인한 민·형사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나.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공기연장

-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 나. 공사기간 중 강우, 강설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 강설 일수 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1. 공사시행 및 작업완료 보고

수급인은 발주청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작업 지시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시공 상황을 실측 한 도면과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하여 작업완료보고서를 감독관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의 의무

-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기술적인 사

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시 손상을 받은 공사 부분이나 표준 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지방서와 설계도서
에 부합되도록 수급인이 부담하여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법령에 의해 배치한 현장대리인을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시켜서는 아니 된다.

13. 기타사항

가. 단가 계약된 물량은 추정 물량이므로 증·감 될 수 있다.

나. 일자리 창출 : 본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중 성북구민 중에서 고용을 희망하는자 2인
이상을 의무 고용 하여야 한다